

##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신청인	상 호 (법인명)		
	성 명 (대표자명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주소
컨테이너	형식	형식증서번호	
	변경 전	변경 후	
변경사항			
변경사유			

「선박안전법」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3,000원
------	----	-----	--------

## 유의사항

-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  -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
  -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
  -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
  - 「선박안전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 - 정당한 사유 없이 「선박안전법」 제75조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

## 처리절차

